

서울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007106(본소), 2021나2007113(반소) 판결 [계약금등
반환청구소 ·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허기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재성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2. 24.

판 결 선 고 2022. 3. 31.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20가합562726(본소),
2020가합562733(반소)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1,397,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2. 3. 3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모든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억 원 및 그중 1억 원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1억 원에 대하여 2019. 2.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제1심에서 구하던 2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 기간의 이율을 낮추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93,553,7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93,553,7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부터 제4면 제16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576조 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가압류, 근저당권 및 전세권을 말소시키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2차례에 걸친 최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8. 9.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민법 제576조 제1항에 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민법 제390조에 기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의 손해배상예정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이 사건 가압류, 근저당권 및 전세권 말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상당액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1)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9.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이행 제공하며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채무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피고는 원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9. 7. 24.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 원을 물취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 주식회사 G의 청구금액 6억 원의 가압류를 인수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을 89억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의 귀책으로 2019. 7. 25. 위 합의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위 합의가 파기되었다.
- 3)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와 이 사건 변경합의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4)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해당 대출금의 연체이자 상당인 593,553,736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593,553,736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무엇인지, 특히 그 해제가 원고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8행부터 제10면 아래에서 제2행까지의 기재 부분(“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사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의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19, 2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⑦ 피고는 2019. 2. 28. 위 메시지의 내용대로 서류들을 구비한 채 원 · 피고 사이에 이행장소로 정하여진 K 사무실에 출석하였고, 이어서 원고에게 위 서류들을 구비한 상태로 위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이 사건 가압류의 해방공탁을 위하여 514,642,685원을 준비한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으나, 원고는 위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 제1심판결 제8면 마지막 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7행부터 제10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2019. 2. 28. 기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채무액은 합계 82억 8,800만 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5억 원 + F에 대한 이 사건 전세권 해지 계약에 따른 잔금채무 11억 원 + 이 사건 가압류 관련 청구금액 6억 8,800만 원)이었던 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81억 5천만 원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가압류의 해방공탁을 위하여 즉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피고의 배우자인 L 명의의 E 계좌에 425,642,685원을 확보하여 두었다[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의 해방공탁을 위하여 514,642,685원을 준비하였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좌의 2019. 2. 27. 기준 잔액 514,642,685원에서 같은 날 합계 1억 원이 출금된 후, 그날과 2019. 2. 28. 합계 11,000,000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기일인 2019. 2. 28. 기준 잔액은 425,642,685원(= 514,642,685원 - 1억 원 + 11,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적어도 2019. 2.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는 즉시 잔금 81억 5천만 원에 위와 같이 준비해둔 425,642,685원을 더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를 말소시킬 수

있었다고 보인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피고가 2019. 2. 28. 당시 F과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세금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법원의 성북구청장과 성북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더라도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세금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법원이 실시한 증인 F의 서면증언에 의하더라도 F은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수 없었던 사실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모른다'라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보일 뿐이고 그 서면증언에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4. 4.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만약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으면 이를 알려주되 '2019. 4. 8.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은 해제된다'는 취지를 밝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다음 날 위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2019. 4. 8.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증명과 같이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 2019. 4. 8.이 도과함으로써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9. 4. 8.이 도과함으로써 해제된 이상,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더라도 이는 위 매매계약 해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위 매매계약이 민법 제57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2019. 4. 8.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 전세권 및 가압류 말소 의무를 지체하였다거나 이 사건 반소로써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2) 다만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에는 위 매매계약이 원고의 귀책으로 해제되는 경우에도 피고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8. 12. 17. 계약금 1억 원을, 2019. 2. 1. 중도금 1억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7. 24. 원고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과 중도금 2억 원을 몰취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1, 22, 29, 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9. 7. 24.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논의를 시도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변경합의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경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한편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채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남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101,397,259원(= 후술하는 바와 같이 상계 후 남은 계약금 1,397,259원 + 중도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는 상계적상 다음 날인 2019.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 지체책임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참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참조). 다만, 이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그 특별손해까지도 위 예정액에 포함되고, 설령 채권자의 손해가 위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참조).

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계약조항은 그 문언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가 위 계약조항에서 말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위 계약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상당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이 오로지 원고의 이익과 요구에 따라 이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어서, 손해배상액을 위 계약금인 1억 원으로 제한할 경우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초과하여 피고의 손해액 593,553,736원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위 계약금 상당액으로 제한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계약조항의 효력을 부인하고서 위 계약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2019. 7. 24.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을 89억 원으로 정하는 등 새로운 내용의 이 사건 변경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른 채무마저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변경합의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593,553,73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경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이상 별도로 자신의 잔금 지급의사나 지급능력을 피고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계약상 의무를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겠다는 표현일 뿐이므로 피고에 대한 기망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7. 24. 이 사건 변경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변경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상계 항변

가) 원고는 설령 피고의 반소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 원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억 원의 반환채권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1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채권들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 2019. 2. 28.에 상계적상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2022. 2. 23.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피고는 원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동채권인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상계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9. 2. 28.에 소급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① 계약금 1억 원에 대한 2018. 12. 17.부터 위 상계적상일인 2019. 2. 28.까지의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1,013,698원(= 1억 원 × 0.05 × 74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중도금 1억 원에 대한 2019. 2. 1.부터 위 상계적상일인 2019. 2. 28.까지의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383,561원(= 1억 원 × 0.05 × 28일/365일), ③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원의 계약금 반환채권 중 98,602,741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순차로 소멸하여 남지 않게 되었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마용주, 판사 임종효, 판사 주선아